

여신거래기본약관

데라게란덴(주) 귀중

이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 이라 합니다)은 데라게란덴 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 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 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 ①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사이징자, 할부금융이용자, 차주, 할인 신청인, 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도링, 어음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 배서, 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이 약관은 금융회사의 본·지점과 채무자(기업의 경우 본·지점 포함)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거래와 채무이행에 공동으로 적용됩니다.
-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 ① 리스료, 할부금, 이자, 할인료, 보증료, 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 이라고 합니다.)의 율, 계산방법,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에서 채무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자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쟁 및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시장변동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 인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기로 합니다.
-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상, 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시장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 상관속 등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이라 합니다.)의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기존 약정에 따른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던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⑦ 금회사의 채무자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금융시장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 ⑧ 제4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채통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 ⑨ 제3항 및 제7항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이익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⑩ 제5항의 지연배상금들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 *에 '연체가산이자율' 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 < '상방',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회금액을 가계자금대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

제4조 (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채무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몰상비중언이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 보존(해지 통지)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 조사, 추심, 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
-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갈파고, 곧 갈피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2개월의 기간을 갈파고, 상환, 성립 제54조(상사법정이율)법규(원 26%)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갈피기로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여신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시설대여의 경우 리스료를 말함), 기한도래 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4조2 (청약의 철회)

- ①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4조3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

-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제2조에서 허용한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로서 직접변제에 종용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채 비용을 뺀 잔액을 제16조에 준하여 총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목적물은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가 정액에 지급합니다. "채무자" 는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③ 채무자(제6조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는 등 당해 금융회사가 여신전달 금융업법 제50조의11을 준수하고 채무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제2항제5호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처분이 이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실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
- ④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계약상서 및 고지하는 경우 해와 회계관계에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금융회사의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가 신청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요청 등만으로 담보목적물을 즉시 처분한 경우 금융회사가 그 관련된 모든 분쟁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서 직접 변제에 종용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5. 금융회사의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의 정보
- 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을 지장을 초래할 현상발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현상발생행위 또는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⑥ 채무자(기업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연대보증인)

-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공동사업자나, '주택법' 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금융소비자가 공동주택 관련 이주비 또는 중도금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시공사
 2.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대표이사
 - 나. 무한책임사원
 - 다. '상방' 에 따른 최대주주
- ③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 ④ 그 밖에 가혹무대 라목기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⑤ 제2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⑥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정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⑦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동의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 ⑧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거래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남이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있어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의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
- ⑨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인의 보증에 대하여 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금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대체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⑩ 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해제, 보증금의 감액 등 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 안기도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도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동 요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외부)

-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갈파야 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 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항 제1호의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부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금에 관하여 조세징수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가대결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파,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 ② 채무자의 과징금처사·실질적인 기업유지 포괄건보증인인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도달된 때,
- ③ 채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와 외국근로의 결론 및 연구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갈파야 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기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기계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 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기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채무자가 기계인 경우 7영업일)에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갈파야 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지연배상금이 제한된다는 사실 및 관련 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이 경우 (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로 및 할부금 제외)를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업인 경우에는 30일(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 ⑥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 ⑦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금에 미달한 금액이 할부금의 10분위를 초과 하는 요건이 충족한 때
- ⑧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 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먼저,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가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갈파야 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갈파야 할 의무를 진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 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4. 제5조, 제22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청산절차 개시, 결산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업계의 도산, 회사경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6. 신용징부대상인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정보·부도정보·관련연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등 등록된 때
 7.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 의의 도달일 부터 10일(기업으로 금융회사에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갈파야 할 의무를 진다.
 1. 제6조 제1항,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체납금이나 담보대출에 대한 보헌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 하거나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달 모든 건전한 당해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 치·완공된 기계·군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의 개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회사의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 지 아니할 때
 - ⑤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여도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제2항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에 의한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이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하여, 이를 곧 갈파야 할 의무를 진다.
 - ⑥ 금융회사가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 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
 -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명 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칭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9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 ① 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금융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

